

# 개정된 면세유 정책의 개요 및 문제점

농협중앙회가 7월 1일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2% 징수하자, 많은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7월부터는 면세유 감세폭을 75%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은 농가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면세유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면세유 감세폭이 75%로 조정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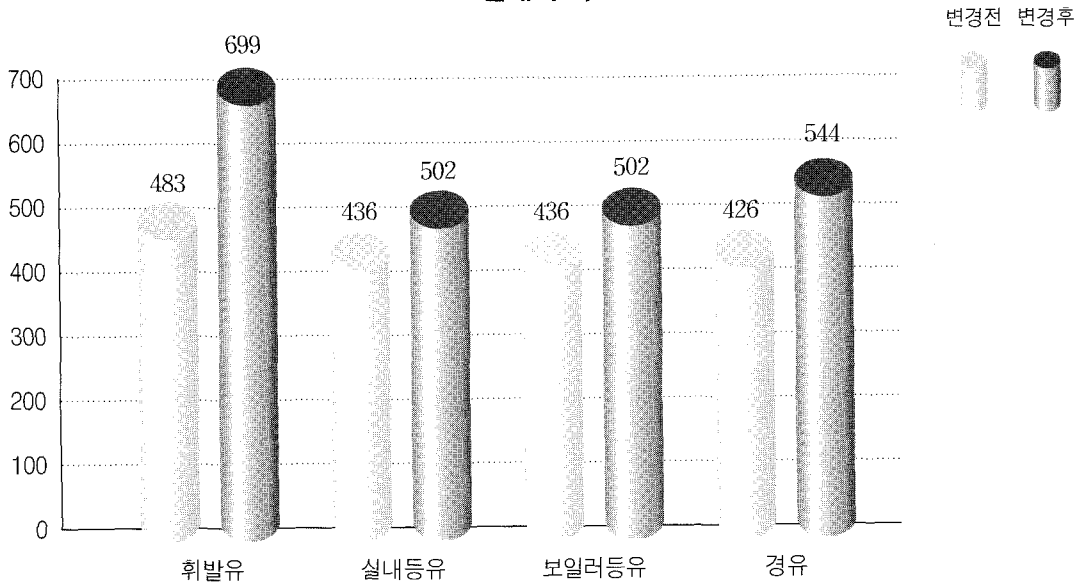
## ● 개정된 면세유 정책의 개요

■ 법 개정<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 2>  
<개정일 : 2002년 12월 11일>

-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권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표1-1>

### 감세폭 축소



#### 진행사항

농업용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농민에게 부담시키는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75%만 면세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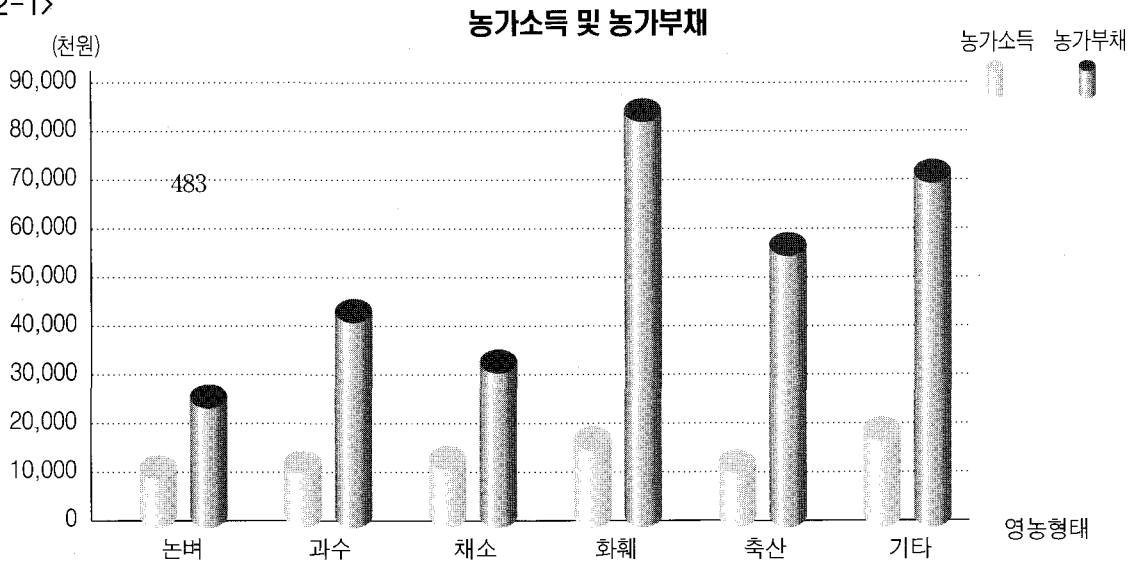
위의 표<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세폭 축소에 취급수수료 2%까지 포함하면 유류비 상승과 농자재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우리 농업은 위기에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은 한·칠레 FTA 체결과 DDA 농업협상 등 농업개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시장 관세화 유예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농업개방을 유예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입농산물과 맞서고 농민들의 소득제고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경쟁력 향상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농협과 정부인 만큼 생산비 절감에 크게 이바지 하였던 면세유에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감세폭을 축소하겠다는 이번 방침에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2-1>



(2003년, 한국결림조사)

<표2-1>를 보면 지금 농민들은 농가부채가 농가소득을 웃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고가의 농기계로 인해 연체 이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면세유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농가들을 중심으로 영농포기, 탈농 등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우리 농업과 세계 농업은 개방농정하에 있다. 그러나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G-20들의 농업보조금 철폐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부자나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보조금이 지난해 농가수입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농업개방과 더불어 더욱 많은 농업보조금이 필요한 시점에 면세유 감세폭 축소 방침은 국민적 비판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또한 석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와 주행세는 농기계 사용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

부는 영농기계화를 목적으로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농민들에게 농기계 사용을 권장하였는데, 원료인 석유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농기계가 주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이 주행세를 내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세유 정책은 농민의 혜택이라기보다는 농민의 생존권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 개방,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부채, 농자재 값 상승 등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농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업을 살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면세유 감세폭 축소 방침은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부분과 이반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농가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고유가로 농민의 유류비 부담이 심각한 시점에 면세유 감세폭 인하 방침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인농연**